예 산 총 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Г	합 계	1,556,392,890	46,691,787
일반회계		1,397,915,919	41,937,478
특별회계		158,476,971	4,754,309
	공기업특별회계	118,098,313	3,542,94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5,398,398	1,961,95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2,699,915	1,580,997
	기타특별회계	40,378,658	1,211,360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2,715,376	81,46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 121,576	153,647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7,236,170	517,085
	주택사업특별회계	39,730	1,19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14,500	45,435
	주차장특별회계	10,751,306	322,539
	마리나항만개발사업특별회계	3,000,000	90,000

- 제 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조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016,862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76,6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